



## 세제혜택이 기업 기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_ 서희열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mail : [suhhy@kangnam.ac.kr](mailto:suhhy@kangnam.ac.kr)

### ○ 약력 및 주요경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수료(경영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경영학 박사)  
 미국 뉴욕 St. John's University 방문교수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등 근무  
 세무공무원교육원·관세공무원교육원·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전주대학교 경상대학중소기업대학원 세무학과 조교수  
 공인회계사 시험위원(세법실무·세법개론·세법)  
 세무사 시험위원(세법학, 세무회계)  
 관세사 시험위원(내국소비세법)  
 행정고시 시험위원(세법)  
 사법고시 시험위원(조세법)  
 행정쇄신위원회 조세분야 전문위원  
 국세청 과세전적부 재심사위원회 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동탑산업훈장 수훈(2001년, 납세자의 날)

現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現 경기도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現 (사)한국세무학회 2005년 학회장

### ○ 최근 주요논저

「세법총론」, 2005, 세학사  
 「세무회계연습(공저)」, 2005, 세학사  
 「소득세법」, 2005, 세학사  
 「소비세제법」, 2005, 세학사  
 「현대생활과 세금(공저)」, 2005, 세학사  
 「법인세법개론(공저)」, 2005, 세학사  
 「세무학의 입문(공저)」, 2000, (도서출판)광고  
 신고납부세제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외 다수

## 제 3장

# 세제혜택이 기업 기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 비영리법인에 대한 개관
  - 1. 비영리법인의 개념
  - 2. 비영리기관의 종류
  
- II. 현행 세법상 기부금의 개요
  - 1. 기부금의 개념
  - 2.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 3. 현물기부금의 평가
  - 4. 기부금의 종류
  - 5.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III. 실태조사에 따른 분석
  - 1. 세법상 분류별 기부금 비율
  - 2.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인지도
  - 3. 세제혜택 증가 시 사회공헌활동 규모 확대 의향
  
- IV.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 도입검토
  - 1. 미국의 공익성 검증제도
  - 2. 비영리법인 공익성 검증체계의 확립
  
- V.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검토안
  - 1. 검토취지
  - 2. 검토방안
  - 3. 신구조문 대비표
  - 4. 현행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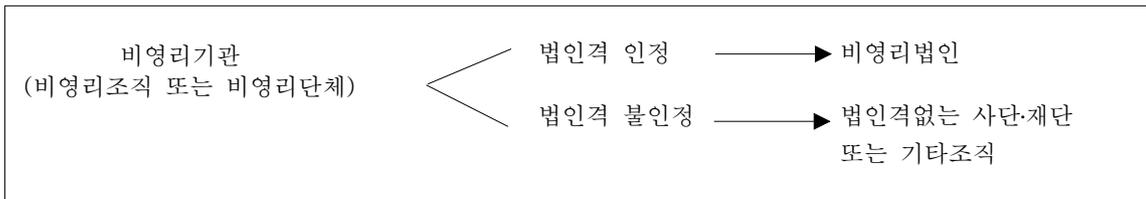
# I. 비영리법인에 대한 개관

## 1. 비영리법인의 개념

### 가. 비영리법인의 정의

#### (1) 비영리기관의 개념<sup>7)</sup>

비영리기관이란 영리기관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영리조직 또는 단체가 법인격을 인정받아 법인으로 성립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이 된다. 그렇지 못한 비영리조직 또는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 조직으로 존재하게 된다.<sup>8)</sup>



#### (가) 미국회계학회의 보고

미국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 AAA)는 “비영리기관회계위원회의 보고(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for Non-for-profit Organization)”에서 다음에 열거한 특성 중 하나가 있는 것은 비영리기관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9)</sup>

- ① 의도적 또는 의식적인 이윤추구의 동기가 없을 것
- ② 개인 또는 개별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③ 지분이 매각 또는 교환되지 않을 것
- ④ 자본의 출연자 또는 기증자로부터 직접 또는 비례하여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을 것

이 정의에 따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조직이 비영리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 ① 대학(College and Universities)
- ②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
- ③ 병원(Hospital)
- ④ 보건복지지원기관(Voluntary Health And Welfare Agencies)

7) 정병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무(Ⅰ)」, 한국세무협회, 1988.

8)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기관과 비영리법인을 같은 것으로 보고 기술하기로 한다.

9) AAA, "Report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for Non-for-profit Organization" Supplement, Vol. 46 1971, pp. 84 ~ 86.

- ⑤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
- ⑥ 정부기관(Government)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직은 비영리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조직의 구성원·회원 또는 출연자가 재무상의 효익을 받거나 또는 요구하기 때문이다.

- ① 협동조합(Cooperatives)
- ② 노동조합(Labor Unions)
- ③ 무역협회(Trade Associations)
- ④ 골프 또는 컨트리클럽(Golf or Country clubs) 등

#### (나)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의 보고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의 비영리기관에 관한 재무보고목적(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business Organization, SFAC No.4)에서 비영리기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sup>10)</sup>

- ① 비영리기관의 자원은 출연에 의하여 조달되며, 출연자는 경제적 효익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 ② 활동목적은 비영리에 있으며, 창출된 이익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지 배당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 ③ 지분이 없으므로 이를 매각·교환·상환할 수도 없으며, 청산시에도 잔여재산을 배분하지 않는다.

이상의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비영리기관이란 출연자의 출연금액 다과와 상관없이 지분권이 없으면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와 재화를 창출 배분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영리기관과의 비교<sup>11)</sup>

비영리기관에 있어서의 회계개념이나 회계기준 근거 중 영리기관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유사점

유사점으로는

첫째, 양자 모두 동일한 경제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한다.

둘째, 양자 모두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한다. 즉,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의 사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구하는 목적에 관계

10)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4,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business Organizations" 1980, 6~9.

11) 홍성오,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목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12.

없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계획·실행·통제라는 순환적인 경영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셋째, 양자 모두 재무적으로 생존가능해야 한다. 즉, 만족할만한 수준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출연자나 기타 수혜자들로부터 끊임없이 획득해야 한다.

넷째, 양자 모두 시장에서의 교환거래에 의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인력이나 원재료 또는 시설재를 얻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은행차입이나 기타 채무부담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 (2) 차이점

차이점으로는

첫째, 존재이유가 다르다. 즉, 영리조직은 이윤추구목적으로 존재하지만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질과 양은 영리조직과는 다른 측면에서 결정된다. 또한 영리조직은 계속적인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산될 수 밖에 없지만, 비영리조직은 사회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채산성에 관계없이 계속 존재할 수도 있다.

둘째, 출연자의 의도와 자원조달방법이 다르다. 영리조직인 기업의 투자자나 채권자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만 비영리조직의 출연자는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투자자나 채권자 등으로부터 조달하지만, 비영리조직은 강제적인 부과방법이나 자발적인 증여·기부·회비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의 자원을 조달한다.

셋째, 시장기능에의 의존도가 다르다. 영리조직은 거의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하지만 비영리조직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시장기능에 의존한다.

넷째, 성과측정의 난이도가 다르다. 영리기업의 경우 경영의 성과와 능률이 이익이라는 단일의 기준에 의하여 측정·평가가 가능하나, 비영리조직에 있어서는 단일의 측정치에 의한 전반적인 경영성과의 평가가 곤란하다.

다섯째, 사회적 통제 및 보고의 대상이 다르다. 사회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도의 자율을 부여하지만,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는 법률, 기금, 예산제도를 통해 엄중하게 관리한다. 또한 기업은 주로 소유자에게 보고책임이 있으나, 비영리조직은 대체로 출연자 및 일반 대중에게 보고책임이 있다.

## 2. 비영리기관의 종류<sup>12)</sup>

### 가. 자원조달방법에 따른 구분

비영리기관이 활동을 전개하려면 자원이 필요하다. 소요자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가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통해 자원을 조달하는 기관

12) 이동규, 「비영리회계」, 형설출판사, 1994. p.26~28.

비영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대부분을 기관 스스로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통해 조달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에는 종합병원, 대학(교), 공기업 등이 해당된다.

(2) 재화나 용역의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자원을 조달하는 기관

필요로 하는 재무자원의 대부분을 기관 자체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수익이 아닌 다른 방법 즉, 회원의 회비, 보조금, 세금, 기부금 등으로 조달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자선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이 해당된다. 앤소니 교수는 이들 조직체를 비기업형 비영리기관(Nonbusiness Type : B Type)으로 분류하고 있다.

앤소니 교수의 자원조달방법에 따른 비영리기관의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자원조달방법에 의한 비영리기관의 구분

← 영리기관 →	← 비영리기관 →	
영리기관	A형(기업형 비영리기관)	B형(비기업형 비영리기관)
영리방식의 자원조달		비영리방식의 자원조달

위 <표-1>은 조직의 목적과 지분의 성격에 의해 영리·비영리 양 기관으로 구분한 것이며, 표에서 아래 부분은 자원의 조달을 기업방식에 의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상의 구분에서 볼 때 진정한 비영리기관은 비기업형 비영리기관(B Typ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영리기관마다 그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들을 기업형과 비기업형으로 명백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양자 각각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회계사고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비기업형 비영리기관은 활동의 내용에서부터 자원의 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이 영리기업과 판이하기 때문에 적용되어야 할 회계개념 및 회계기준도 영리기업과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나. 비영리기관의 소유와 지배형태에 의한 구분**

비영리기관을 누가 소유·지배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소유·지배하고 있는 비영리기관과 민간부문에 의해 소유·지배되거나 경영되는 비영리기관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지배하는 비영리기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민간부문의 비영리기관회계와 구분하여 정부회계라는 별도의 회계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재무회계기금(Financial Accounting Fund)의 산하 조직으로서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그 대표적인 기관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의 거대화, 활동내용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이 분야에 대한 회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2) 민간부문에 의해 지배되거나 경영되는 비영리기관

여기에는 민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 또는 재단 형태의 비영리기관이 속한다. 대학 등 학교기관,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은 거의가 재단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대표적인 민간부문 비영리기관들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이외에도 상당수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기도 한다. 즉,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법인, 의료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 등 수많은 비영리기관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민간부문 비영리기관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정부와 민간부문 비영리기관의 특성 비교

정 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민간부문 비영리기관
시민에게 봉사하는 조직 이윤동기가 없다. 세금 징수를 통한 자원조달 법률에 의해 모든 것이 지배된다. 자원에 대한 수탁관리 책임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이윤동기가 없다. 자발적 기부에 의한 자원조달 자율성이 비교적 크다. 자원에 대한 수탁관리 책임

## 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개인)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만 설립이 가능하다(민법 제 33조).

한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비영리법인은 민법규정에 의하여 성립된다(민법 제 32조). 이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성립한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상법 제 169조) 일반적으로 「회사」라 부르며,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가지 형태가 있다(상법 제 170조).

법인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단법인

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 본체인 점에서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재단법인과 그 성격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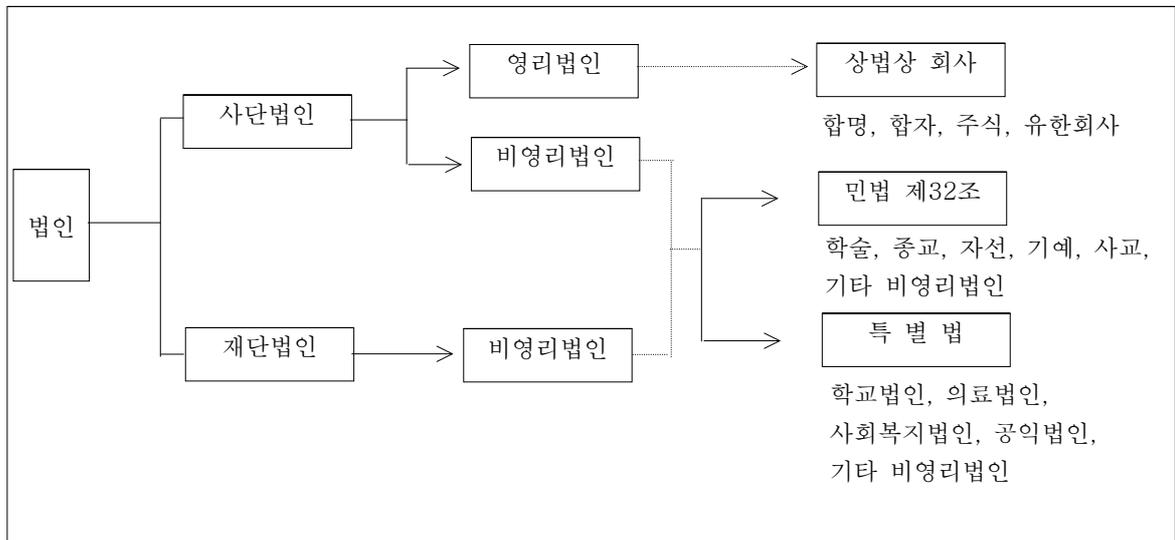
사단법인은 그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의 결의이다. 사단법인의 성립은 그 법인의 기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민법 제 32조)과 영리법인인 사단법인(상법 제169조)<sup>13)</sup>으로 나눈다. 그러나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비영리사단법인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sup>14)</sup>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영리사단법인인 주식회사 등의 경우에는 준칙주의에 따라 성립요건을 구비하여 설립등기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다.<sup>15)</sup>

사단법인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법인의 형태



(가) 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단이다.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말한다(상법 제169조).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는 합명회사를 비롯하여 합자회사·유한회사 및 주식회사가 있다.

(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13) 상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상법 제 169조).

14) 박윤직, 「민법총칙」, 경문사, 1982, p.214.

①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장관 및 기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다.

②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 32조 :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15) 박윤직, 「위의 책」, p.214.

영리법인은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법인이 성립하는 준칙주의에 따르고 있다(상법 제 172조).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이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성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예컨대, 적십자사와 노동조합 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또는 출연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권리능력을 부여받아 성립한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sup>16)</sup> 이는 재산출연(유언출연을 포함한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 구성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라는 것이 없다.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없으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예를 들면 학교법인·의료법인·종교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단법인의 성립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그 기본규칙이 되는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3) 법인격이 없는 사단과 재단

### (가)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은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이 없는, 즉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부여받지 못하고 이루어진 사단을 말한다. 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31조 및 제33조). 그러나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또는 설립 후 관청의 허가나 사후 감독 등 기타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기피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법인격 없는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권리능력이 없거나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동창회·학술단체·향우회 기타 사교구락부 등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수가 상당수에 달한다.

### (나) 법인격 없는 재단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또는 출연된 재산의 집단을 재단이라고 한다. 재단은 사적소유를 벗어난 재산으로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 재단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단은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으므로 해서 그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법인격 없는 재단」 또는

16) 법문사, 「법률학사전」, 1981, p.789.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한다.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 ○○장학기금·○○체육후원기금·○○친목기금 등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사적 소유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단법인의 설립절차요건을 갖추는데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적 규제를 기피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이 강제되어 있지 않는데서 「법인격 없는 재단」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 (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가) 영리법인

사단법인은 그 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눈다.<sup>17)</sup>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실익은 그 법인이 민법상의 법인인가(민법 제32조 이하) 또는 상법상의 법인인가를 구분하는데 있다.

영리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이 있는 사단법인으로 성립한다(민법 제39조).<sup>18)</sup> 현행법상 재단법인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영리법인으로 성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2·39조).

영리법인은 의도적·계획적·조직적인 이윤동기 위에서 활동하며, 그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또는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영리법인의 전형적·일반적인 법인 형태인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교통·통신·언론·전기·가스·보도·출판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성원 또는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이 되는 것이다.

##### (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성립한다(민법 제32조).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사단과 재단의 형태가 있다. 현행법은 특별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본래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는 즉,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의료법인·학교법인 및 기타 종교단체 등은 비영리법인이기도 하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원료·입장료·관람료 및 기타 수입을 얻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이후 영리를 아울러 획득하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도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이 수입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인지의 여부를 살펴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17)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89, p.152.

18)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라. 비영리법인의 종류에 대한 통계

### (1)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오늘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그 수가 상당수에 이르는 데<sup>19)</sup>, 비영리법인은 민법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것 이외에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많은 특수 비영리법인이 있다.

<표-38> 연도별 법인수 현황

(단위:개, %)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총계	영리법인/총계	비영리법인/총계
1998	169,018	12,817	181,835	93.0	7.0
1999	193,059	13,295	206,354	93.6	6.4
2000	229,120	13,532	242,652	94.4	5.6
2001	273,561	12,791	286,352	95.5	4.5
2002	304,880	12,274	317,154	96.1	3.9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

민법규정에 의해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은 사인(私人)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

법인세법과는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sup>20)</sup>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단체를 공익사업에 한정하는 점에서는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으나, 공익법인 등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단체도 포함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표-39> 유형별 공익법인 현황

(단위:개)

구분 연도, 시도	구분							
	계	학 교	학 술 장 학 자 선	사 회 복 지	의 료	종 교	문 화	기 타
1998	5,221	1,154	1,333	1,254	293	381	245	561
1999	5,486	1,197	1,392	1,307	289	424	245	632
2000	5,773	1,310	1,413	1,242	274	543	263	728
2001	11,063	1,727	1,826	1,972	382	3,810	351	995
2002	10,987	1,531	1,862	1,962	380	3,890	365	997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

19) 2002. 12. 31 현재 비영리법인의 수는 12,274개이며 그 중 10,987개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004. 9. 30현재)

□ 등록단체 현황

계	중앙행정기관 (25개부처)	시·도
5,095 (100%)	540 (11%)	4,555 (89%)
'04. 6.30대비 +87	+7	+80

□ 부처별 등록현황

계	행 정 자치부	문 화 관광부	보 건 복지부	환경부	통일부	외 교 통상부	교육인적 자원부	농림부	법무부	재 정 경제부
540	96	86	67	63	37	37	27	19	4	15
	정통부	노동부	여성부	건 설 교통부	해 양 수산부	경찰청	농 촌 진흥청	산림청	식약청	기타
	8	22	12	3	12	6	6	9	2	9

※ 기타 : 해양경찰청<sup>2</sup>, 기획예산<sup>1</sup>, 국가보훈처<sup>1</sup>, 산자부<sup>3</sup>, 통계청<sup>1</sup>, 중소기업청<sup>1</sup>, 국방부<sup>1</sup>

□ 시·도별 등록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589	337	202	265	185	186	160	787	
4,55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5	181	190	294	218	313	307	166

## II. 현행 세법상 기부금의 개요

### 1. 기부금의 개념

#### 가. 기부금의 개념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법령 35 (1)). 기부금은 무상으로 지출하는 가액이라는 점에서 접대비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고,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한편 기부를 받는 자는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sup>21)</sup>

#### 나. 의제기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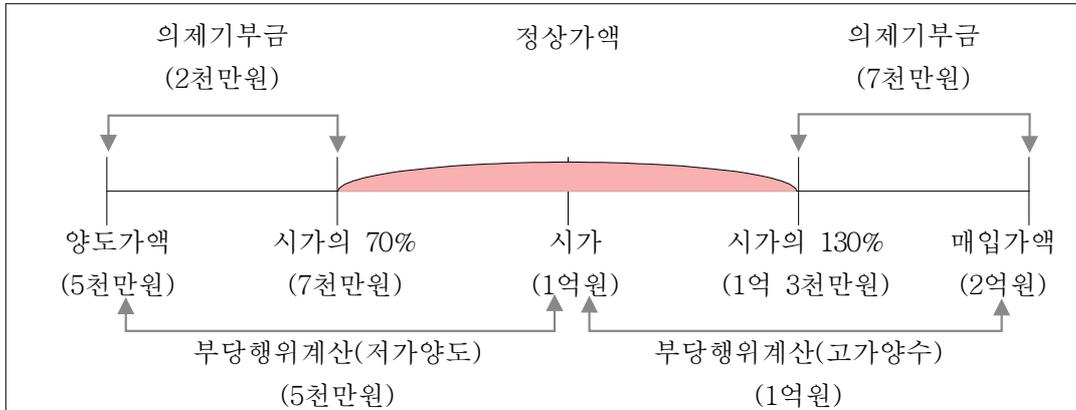
기부금에는 타인(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타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에 대한 재산적 가치의 실질적인 증여와 정당한 고려(consideration)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되는 의제기부금이 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30%를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법령 35 (2)).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의 경우 정상가액(시가±시가의 30% 범위)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할 때나 매입할 때 시가의 70% 이상 또는 시가의 130% 이하의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시가의 60%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시가의 10%(정상가액의 하한인 70%와 실지거래가액인 60%와의 차이)만이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것이며, 시가의 140%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시가의 10%(정상가액의 상한인 130%와 실지거래가액인 140%와의 차이)만이 기부금으로 의제되며, 기부금의 종류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이러한 계산방식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거나 또는 손금불산입한다.

21)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법기통 24-36...6).

<그림 -1> 의제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자산의 양수도) 비교



## 2.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고, 미지급기부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시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법령 37 ②, ③).<sup>22)</sup>

## 3. 현물기부금의 평가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현물로 기부한 경우를 말함)에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법법 37 ①).

## 4. 기부금의 종류

<표-6> 기부금의 종류

구 분	성 격	손금한도액
①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A)
② 정치자금기부금(㉡)	정당(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A)
③ 특례기부금(㉢)	특정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A) - ㉠ - ㉡] \times 50\%$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A) - ㉠ - ㉡ - ㉢] \times 30\%$
⑤ 지정기부금(㉤)	공익성 기부금	$[(A) - ㉠ - ㉡ - ㉢ - ㉣] \times 5\%$
⑥ 비지정기부금(㉥)	사적인 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22)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법기통 24-36... 4).

## 가.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표-7>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구 분	범 위
법정기부금 (법법 24 ②)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76)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이 경우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  
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법령 38 ②).

## 나.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표-8>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구 분	범 위
특례기부금 (조특법 73)	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 출하는 기부금 ③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 부금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⑤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 등 일정한 연구기관에 지출 하는 기부금 ⑥ 독립기념관·한국교육방송공사·국립암센터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신설)

\* '사립학교 등'에는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설·증설·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  
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에 한함), 기능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 서  
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등을 포함한다.

## 다. 지정기부금

<표-9> 지정기부금 구분

구 분	범 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령 36 ① (1))	<p>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1 로 지출하는 기부금</p> <p>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p> <p>②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p> <p>③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 단체,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p> <p>④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p> <p>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p> <p>⑥ 위 '①' 내지 '⑤'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학술 진흥재단,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등</p>

구 분	범 위
기타 공익목적 기부금 (법령 36 ① (2))	<p>①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p> <p>② 일정한 요건*2 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p> <p>③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p> <p>㉠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p> <p>㉡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p> <p>㉢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p> <p>㉣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2006. 12. 31까지 지급분에 한함) 등</p>
협회비 또는 조합비 (법령 36 ① (3))	<p>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p> <p>② 영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p>

\*1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법령 36 ③)

\*2 공익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상증령 14).

- ㉠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 ㉡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자치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

속될 것

## 라. 비지정기부금

위에 열거한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의 유출(단,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는 배당,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는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정기부금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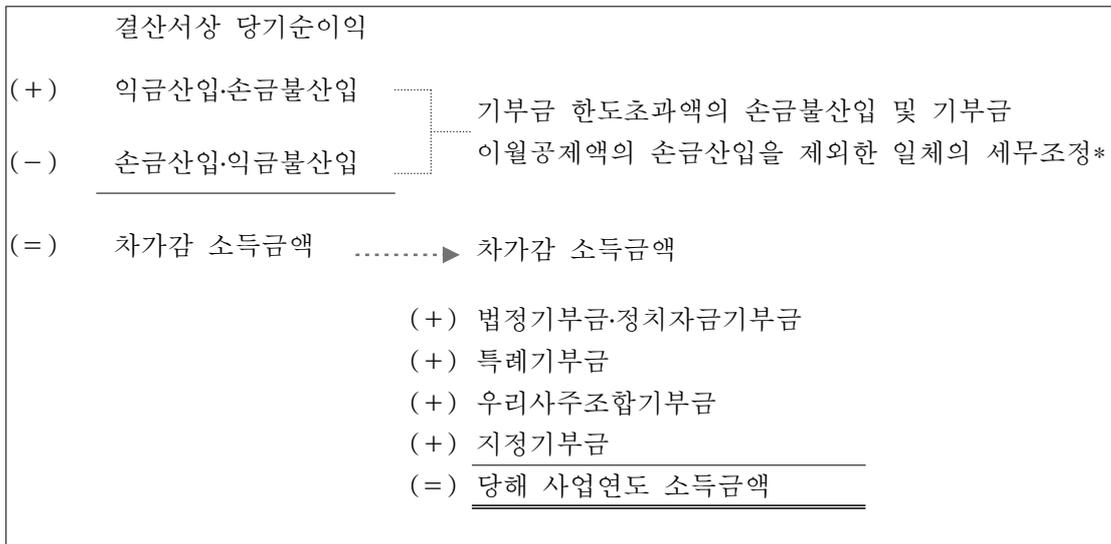
비영리내국법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를 제외한 법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법령 36 ②).

## 5.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법령 38 ③) 즉,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차가감 소득금액(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과 기부금 이월공제액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함)’에 손금에 산입된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림-2>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개념



\*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와 관련된 세무조정, 의제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 나.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이 다음의 손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text{법정기부금 등의 손금한도액} = \text{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5년 이내)*}$$

\*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다.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특례기부금이 다음의 손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text{특례기부금 손금한도액} = (\text{법정기부금 등의 한도액} - \text{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times 50\%$$

(개정내용)→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의 부활

※ 2002년 12월 11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례기부금의 이월공제를 폐지한 바 있으나, 2003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례기부금의 이월공제를 다시 허용(2003년 12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하였다.

## 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초과액(신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다음의 손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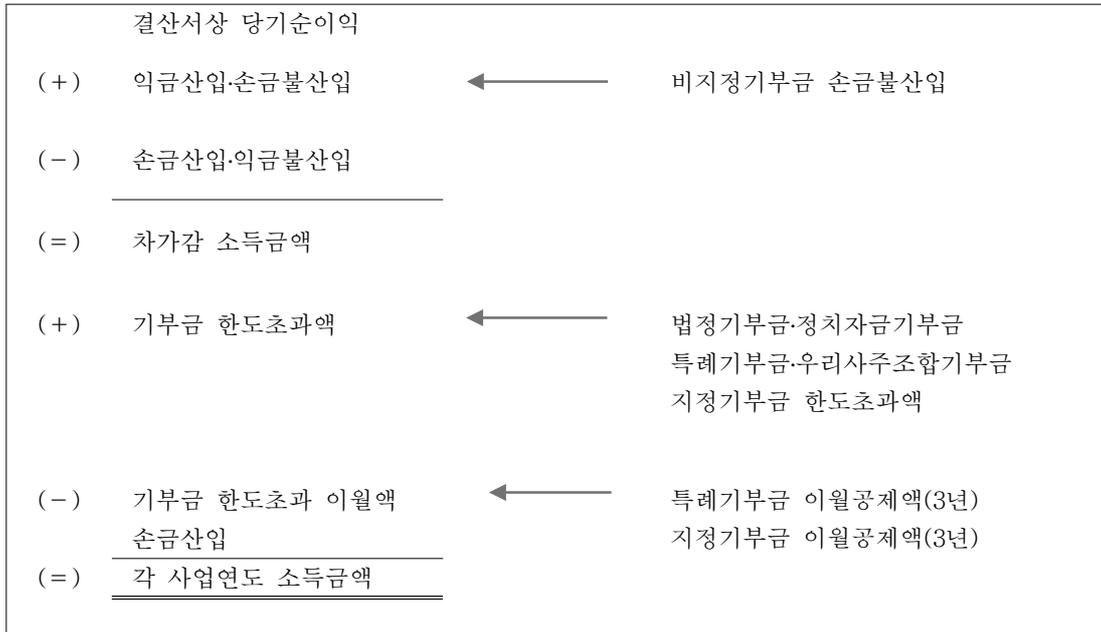
$$\text{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한도액} = (\text{법정기부금 등의 손금한도액} - \text{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cdot \text{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times 30\%$$

## 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지정기부금이 다음의 손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4 ③, 법령 38 ④).

$$\text{지정기부금 손금한도액} \\ = (\text{법정기부금 등의 한도액} - \text{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cdot \text{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times 5\%$$

<그림-3>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이월공제액 조정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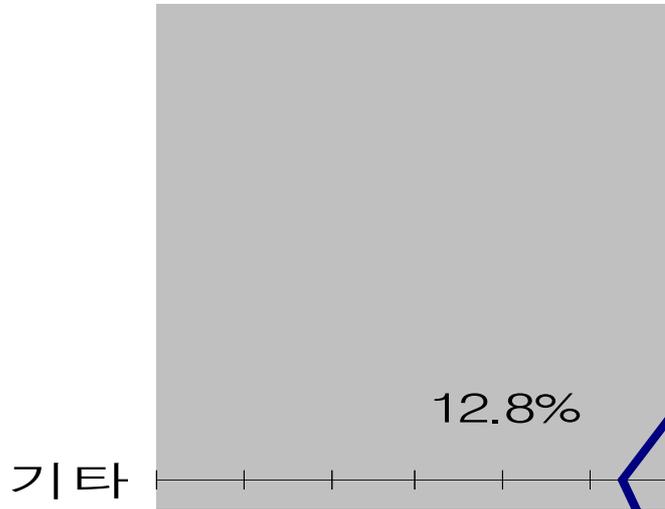
### Ⅲ. 실태조사에 따른 분석

#### 1. 세법상 분류별 기부금 비율

- 2004년도에 기업들이 지출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은 24.3%, 특례기부금은 23.5%, 지정기부금은 39.4%, 그리고 기타 기부금은 12.8%였음<sup>23)</sup>
- 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법정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액의 24%정도이고, 지정기부금의 비율이 39%를 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행위가 세제혜택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함

23) 법정기부금은 기부금전액이 손금산입되며, 특례기부금은 기부금 손금산입한도가 50%이고, 지정기부금은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5%, 기타 기부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안됨 (조세특례제한법 73조 등)

<그림-4> 세법상 분류별 기부금 비율



## 2.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인지도

- 조사대상 기업들 중 39.1% (75개)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에 대해 주어지는 세제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56.3% (108개)의 기업은 제도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한편, 응답기업의 4.7% (9개)는 비영리공익법인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표-10> 비영리공익법인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인지 정도  
(단위:개, %)

세제혜택 인지정도	빈도	비율
제도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5	39.1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108	56.3
전혀 모른다	9	4.7
계	192	100.0

## 3. 세제혜택 증가 시 사회공헌활동 규모 확대 의향

- 비영리공익법인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증가하는 경우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를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38.5% (74개)는 현재보다 더 많이 기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한편, 세제혜택이 증가하더라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6.0% (50개)와 34.4% (66개)였음

<표-11> 세제혜택 증가 시 사회공헌활동 규모 확대 의향

사회공헌규모 확대 의향	빈도	비율
현재의수준을유지하겠다	50	26.0
현재보다더많이기부할의사가있다	74	38.5
잘모르겠다	66	34.4
관심없다	2	1.0
Total	192	100.0

## IV.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 도입검토

### 1. 미국의 공익성 검증제도

미국 세법 제501조(c)(3)에서 면세 자격이 있는 기관은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공공안전 시험의 목적, 또는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장려(경기장 시설이나 장비의 제공은 제외), 또는 아동 및 동물 학대 방지의 목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는 법인, 금고, 기금, 재단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기관의 소득이 주주나 특정 개인을 위한 이익으로 분배되어서는 안된다.
- ② 기관의 실질적 활동이 정치적 선전활동 또는 입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 ③ 공공기관의 후보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운동에 참여·개입(출판 또는 연설문의 배포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가. 조직 테스트

공익적 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 첫째, 그 목적을 하나 이상의 면세 목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그 기관의 주요 활동으로서 면세 불가한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 둘째, 기관의 수입을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셋째, 기관의 청산시 그 자산을 면세 목적이나 면세기관에 분배하도록 하며, 넷째, 여타의 입법로비, 선거운동 등의 정치적 활동에 실질적으로 가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 (1) 정관

소득세 규정은 공익적 기관에 대하여 2가지 유형의 관리규정을 검토·적용하는데, 첫째, 기관이 설립된 근거가 되는 정관(article) 즉, 법인의 설립인가, 협회의 정관, 신탁의 계약합의서, 기타 설립시의 공적 규정과 둘째, 기관을 운영할 때 준수하는 규정을 기술한 내규가 그것이다.

미연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면세 자격을 획득하려는 기관은 정관에 기관의 목적을 하나 이상의 면세 목적을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관에 주요활동으로서 면세목적이 아닌 활동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민간재단의 관리규정에는 그 밖의 추가적인 필요사항이 요구된다.

미국 국세청이 심사과정에서 설립인가를 포함한 정관의 결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면세 자격에 대한 긍정적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함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결함을 수정하더라도 면세 자격은 그 기관의 설립인가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함이 수정된 실제 날짜로부터 주어진다.

## (2) 주정부에의 등록

국세청은 기관의 설립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만족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자격의 타당성을 따로 테스트하지 않는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포함한 일부 주의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이 설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연방정부 수준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한편 주정부에 의해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기관이 모두 면세 자격이 있지는 않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는 국세청에 제출되기 전에 주마다 해당 관할기관에서 승인되거나 등록되어야 하는데,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유사한 기관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명칭의 중복여부에 따른 사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영리법인과 달리 면세기관은 'corporation', 'company', 'incorporated'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

## (3) 목적 조항

공익적 면세기관의 정관은 기관의 목적을 세법 제501조(c)(3)의 8가지 구체적인 공익적 목적인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검사, 문학, 교육,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의 장려, 아동 및 동물 학대의 방지로 제한하고 그 목적들을 위해서만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 (4) 이익분배(Inurement)의 조항

정관의 이익분배 조항은 기관의 수입이 이사, 관리자, 수탁자, 또는 기타 개인에게 분배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 다음의 5가지 거래<sup>24)</sup>를 참조하는 것이 이익분배 조항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① 소득이나 원금 일부의 적절한 보증과 이자가 없는 대부
- ② 합당한 급여나 실제 개인의 서비스에 상응한 보수를 초과하는 보수의 지급
- ③ 특혜를 주는 서비스의 제공
- ④ 적정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이나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적정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이나 자산의 일부를 구입
- ⑤ 소득이나 원금을 면세기관의 창립자, 기부자, 가족구성원,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관리하는 법인에 유용되도록 하는 거래에 참여

한편, 기관이 이익분배 조항에 부응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기관이 공익적 범주 안에서 활동하는지도 보아야 한다. 즉, 그 기관의 면세 활동 산출물의 수혜자 집단이 불특정

---

24) IRC 제503조.

다수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광범위한가를 봐야 하지만 그 해답이 항상 논리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성인건강클럽은 면세될 수 없는데 마을의 청소년체육기관이 면세될 자격이 있는 경우라든가, 종친회는 면세될 수 없는데 이태리인이나 아시아인 같은 특정 민족의 발전을 위한 단체가 자선적으로 취급되는 경우 등이다.

#### (5) 청산 조항

공익적 기관으로서 면세 자격을 얻고자 하는 기관의 정관에는 그 기관이 청산될 때 자산을 반드시 세법 제501조(c)(3)의 면세 목적에 분배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연방정부 또는 주·지방정부에 분배하거나, 다른 면세기관에 주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즉, 청산될 때의 자산이 기증자, 이사 또는 주주, 기관의 구성원, 세법 제501조(c)(3)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나 목적에 되돌려져서는 안된다.

일부 주의 법률은 청산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별도의 언급이 필요 없다.

#### (6) 정치적 활동 조항

면세 자격을 얻기 위한 기관은 정관이나 내규에 첫째, “면세기관의 실질적 활동이 선전활동이거나 입법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활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둘째, “면세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참여 또는 개입(출판 또는 연설문 배포, 연설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셋째, “입법·선거운동기관으로서의 활동에 목적을 두거나 종사함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둬으로써 정치적 운동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 (7) 민간재단

세법 제508조(e)에 의해 민간재단<sup>25)</sup>으로 분류되는 공익기관은 정관에 가산세의 부과를 유발하는 활동을 금지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민간재단의 경우 공익기관이더라도 민간재단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관리규정에 청산시에 잔여 재산을 면세 목적이나 면세기관에 배분해야 한다는 청산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면세기관으로서 분류될 수 없다.

### 나. 운영 테스트

운영에 관한 테스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금지, 정치적 활동의 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 기관이 운영에 관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공익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 테스트에 대한 증거자료로 기관 활동의 성격, 지출의 성격, 재원, 조직 운영의 후원자를 고려한다.

#### (1) 공익의 범위

세법 제501조(c)(3)의 공익적 기관으로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나 제한적인 개인집단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기관이 운영되어야 한다. 즉, 기관이 특정

25) 일반적으로 설립자 가족 또는 특정 개인인 제한적 수의 사람들로부터 재원을 받는 면세기관을 말한다.

개인, 설립자의 가족, 주주 또는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제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수의 가난한 은퇴자들과 그 처를 위하여 설립된 신탁은 면세 자격이 없다. 마찬가지로 특정 사람들을 위한 의료 수술비 지원이나 화재로 불탄 집을 복원해 주며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립된 기금도 공익적 범주로 볼 수 없다. 마을 지역에서 무주택자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사업자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은 무주택자들이나 시민들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역시 공익적 범주로 볼 수 없다.

## (2) 사업활동

실질적 활동으로 사업이나 거래를 하는 기관이라도 연방세법에서의 공익적인 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때는 기관의 사업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이 면세 목적 이외의 사업 즉, 고유목적무관사업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면세될 수 없고 그 주요 목적이 면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이란 말의 의미는 기관 운영의 사실과 환경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즉,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당해 기관이 면세 자격이 있는 공익적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기관의 고유목적무관사업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 (3) 공익적 지출

지출상용 테스트를 제외하면 세법상 공공자선기관에 연간 지출금액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법 조항은 없다. 그러나, 기부자와 후원자들은 그들의 기부금이 가치 있는 용도로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기금이 어떻게 지출되는가를 감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일부 주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지출을 통제하는 규칙을 두고 있는데, 이는 특히 프로그램 비용과 관련된 행정비용과 자금조달비용의 수준을 감시한다.

민간재단의 경우는 일반 기부자들에 의하여 면밀히 감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분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최소한의 분배에 의하면 적어도 투자자산에서 연평균가치의 5%를 매년 공익적 보조금, 프로그램의 수행, 또는 공익적 활동에 사용할 자산의 구입에 지출하여야 한다.

지출 면에서 기관의 면세 자격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세청이 적용하는 기준인 ‘지출상용 테스트’는 면세기관의 지출이 면세기관의 재정 자원의 규모에 상응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1964년에 면세기관이 고유목적 무관사업 활동에 면세기관의 자산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데 처음 채택되었다.

## (4) 소득 축적

면세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은 그 기관의 수입이 실제로 공익사업에 지출되는 비중이다. 따라서 기관의 면세 자격을 검토하기 위하여 면세기관이 그 소득을 공익적 목적에 지출하기보다 저축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저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공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일부 이윤 또는 지출하고 남은 수입이 축적될 수 있다.

① 현재 이후의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운전자본 유지를 위한 경우.

즉, 보조금 손실, 기부의 저조, 투자소득 감소,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운전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이때 영리법인의 소득축적에 관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한 해의 운영예산 최소금액이 운전자본 기금을 위한 적정 최소금액이 될 수 있다.

- ②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노후장비의 교체, 신축건물의 취득, 다른 자본자산의 획득을 위한 경우
- ③ 현재 유용 가능한 자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사용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경우

### (5) 후원 유인능력

전형적인 세법 제501조(c)(3)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자발적인 기부와, 기부로부터의 투자소득 즉, 기본재산이나 운전자본금으로 사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관의 공익적 성격은 기관의 활동을 후원하는 기부를 유인하는 능력에 의하여 증명된다.

미국세청은 기관의 후원 유인능력을 결정하고 조사하는데 후원비율 테스트(support ratio tests)를 행한다. 민간재단의 경우에 어떤 한정된 기부자들로부터 후원이 이루어지면서, 기부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거나 기부가 없는 기관은 공익적 성격이 없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 (6) 입법·선거운동기관

입법·선거운동기관이란 기관의 목적이 지방, 주, 연방법의 개정 등 그 실질적 활동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나 어떤 후보나 정당에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또는 개입<sup>26)</sup>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음과 같이 입법<sup>27)</sup>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 기관은 세법 제501조(c)(3)에 의한 공익적 기관으로서의 면세 자격을 얻을 수 없다.

- ① 입법에 대한 제안, 지지, 반대를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입법기관의 구성원들과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계약이나 주장
- ② 입법의 채택이나 거부를 주장

## 2. 비영리법인 공익성 검증체계의 확립

### (1) 현황 및 문제점

#### (가) 미국의 심사 및 절차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미국세청이 관여하지 않고 비영리법인 중 면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세청의 공익성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공익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직 테스트와 운영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러한 테스트를 거쳐 면세 자격을 획득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면세 자격은 유지된다.<sup>28)</sup>

26) 출판, 인쇄된 연설문의 배포, 연설 등을 포함한다.

27) “입법(legislation)”이란 용어는 미국 의회, 주 의회, 지방 의회 등, 일반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국민발안·헌법 개정 등에 의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면세 자격을 얻으려면 정관과 내규를 제출해야 한다. 정관은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것이고 내규는 기관의 운영지침과 같은 것이다. 조직테스트란 제출된 정관과 내규에 명시된 내용을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다. 공익적 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 첫째, 그 목적을 하나 이상의 면세 목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그 기관의 주요 활동으로서 면세 불가한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 둘째, 기관의 수입을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셋째, 기관의 청산시 그 자산을 면세 목적이나 면세기관에 분배하도록 하며, 넷째, 여타의 입법로비, 선거운동 등의 정치적 활동에 실질적으로 가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조직 테스트가 설립 당시의 취지를 주로 테스트하는 반면 운영 테스트는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의 공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운영에 관한 테스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금지, 정치적 활동의 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 기관이 운영에 관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공익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 테스트에 대한 증거자료로 기관 활동의 성격, 지출의 성격, 재원, 조직 운영의 후원자를 고려한다

한편 미국세청은 면세기관의 재정 규모에 상응하는 공익적 지출을 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지출상용 테스트를 한다. 특히 민간재단의 경우 최소한 투자자산의 연평균가치의 5%를 매년 공익적 활동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면세 기관이 소득을 축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익적 목적에 지출하기 위한 축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요인으로 비영리법인의 후원 유인능력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세청은 후원 비율 테스트(support ratio test)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을 파악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조직 테스트에서 입법활동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 및 선거운동기관은 면세 자격을 얻는 기관에서 제외된다.

#### (나) 우리 나라의 심사 및 절차

우리 나라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각 부처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원하는 자는 동 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관할 부처의 해당 과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설립허가를 하고 있다.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6가지<sup>29)</sup>이며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②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28) 손원익, 「앞의 책」, pp.113~118 참조.

29)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 승낙서
6. 창립 총회 회의록 성명·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③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한편 관할 부처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시 고려하는 기준은 첫째,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특정그룹이 되면 안된다는 것 둘째, 사업이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때 공익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느냐에 따른다.

(다) 양국의 심사 및 절차 비교

지금까지는 비영리법인에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우리 나라와 미국의 절차 및 심사에 대해 살펴 보았다. 미국의 공익성 테스트인 조직 테스트와 운영 테스트를 우리 나라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준과 비교하면 다음 <표-42>와 같다.

미국은 미국세청의 공익성 테스트 기준이고 우리 나라는 관할 부처의 비영리법인 인·허가 시 제출사항, 재정경제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기준을 모두 합한 내용이다.

<표-12> 한국·미국 공익성 검토사항 비교

	미 국	한 국
조직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설립정관에 기관의 목적을 면세목적으로 제한하여야 함.</li> <li>② 미국세청에 면세신청 전에 주정부에 등록되어야 함.</li> <li>③ 청산시 자선목적(501)(c)(3)) 또는 공익목적에 분배하여야 함.</li> <li>④ 이사, 수탁자 등에 이익분배가 금지 되어야 함.</li> <li>⑤ 기관의 목적을 정관에 자선적 목적으로 제한하여야 함.</li> <li>⑥ 정치적 활동 금지</li> <li>⑦ 민간재단은 가산세 부과되는 활동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관제출<sup>1)</sup></li> <li>② 주무관청의 허가<sup>1)</sup></li> <li>③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한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귀속<sup>3)</sup></li> <li>④ 실현 가능한 목적인지 검토<sup>1)</sup></li> </ul>
운영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어야 함.</li> <li>② 자선적 지출 감시</li> <li>③ 수입에서 자선적 지출의 비중</li> <li>④ 면세 목적 지출 규모가 재정 규모에 상응하는지 측정</li> <li>⑤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면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이어야 함.</li> <li>⑥ 기부 유인능력 검사</li> <li>⑦ 입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관이 아니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 이어야 함.<sup>2)3)</sup></li> <li>②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출<sup>1)</sup></li> <li>③ 출연재산의 매각금액 및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sup>3)</sup></li> <li>④ 목적사업 수행 재정능력 검토<sup>1)</sup></li> <li>⑤ 회원(기부자)이 불특정다수인 이어야 함.<sup>2)</sup></li> </ul>

주 : 1) 관할부처의 인·허가시 기준이 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것임.

2) 재정경제부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지정기준에 의한 것임.

3)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익법인 기준에 의한 것임.

자료 : 손원익, 「앞의 책」, p.116.

우리 나라와 미국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일단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세법상 우리 나라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정 시점에서 해당기관의 공익성 테스트를 거쳐 면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면세 자격 부여를 위해 설립정관이나 실질적인 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면세 혜택을 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각 관할부처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으면 당연히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인·허가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간에 인·허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다만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시에만 재정경제부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불특정 그룹의 회원 구성과 불특정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조직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검증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세제지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경우에 비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불충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개선방안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의 단계에서부터 모든 부처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기준은 미국과 같이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도입해야 할 것이며, 제도의 운영도 현재와 같이 재정경제부에서 시행하는 방안과 현장과 가까운 국세청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익성 검증 시스템의 마련은 불필요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V.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검토안

### 1. 검토취지

시민운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익성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손비(필요경비)인정 또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사실상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에 법인이나 특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단체중에서 기존에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나 사후통제 장치가 부재하여, 공평성의 측면에서나 법인운영의 투명성의 측면에서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 2. 검토방안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sup>30)</sup>.

첫째,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단체의 조직, 운영, 재정에 관하여 설정되며, 아울러 이러한 요건은 기존에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인정받고 있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한다.

둘째,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승인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승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 받고자 하는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 받은 단체 중에서 사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철회심사도 담당한다.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 시나 철회 시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다.

셋째,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매년 조직, 운영, 재정에 관하여 일정한 자료들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30) 재정경제부, 내부자료

### 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규정	검토(안)
<p>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p> <p>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p> <p>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p> <p>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p> <p>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p> <p>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p> <p>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p> <p>2. 다음 각목의 기부금</p> <p>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p> <p>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p> <p>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p> <p>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p> <p>②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p>	<p>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b>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지정기부금대상단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회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유사한 명목의 금품</b></p> <p><b>가.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의 숫자가 20인 이상일 것</b></p> <p><b>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사회일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갈 것</b></p> <p><b>다.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b></p> <p><b>라.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또한 특정 정당에 소속된 자가 대표자(사실상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무의 집행책임을 맡고 있지 아니할 것</b></p> <p><b>마.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b></p> <p><b>바. 정관 또는 규약이 존재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b></p> <p><b>사. 재산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것</b></p> <p><b>아. 정관이나 규약에서 해산 또는 청산시에 잔여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b></p> <p><b>자. 총 연간수입중에서 회비, 후원금, 기부금의 비중 또는 금액이 위원회가 정한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일 것.</b></p> <p><b>차. 매년 수지결산서 등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것</b></p> <p>2. 이하 (현행과 같음)</p>

현행 규정	검토(안)
(신 설)	<p>제36조의2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심사위원회) ① 전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요건(이하 “승인요건”이라 한다) 충족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비영리활동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li> <li>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률·회계·세무전문가</li> <li>3. 대학교수 등 비영리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li> <li>4. 관련 공무원</li> </ol> <p>③ 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인요건을 구체화한 심사기준의 설정</li> <li>2.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단체의 승인요건 충족 여부</li> <li>3.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단체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철회 여부</li> <li>4.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사항</li> </ol> <p>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⑦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련 공무원중 1인을 위원회의 간사로 임명한다.</p> <p>⑧ 위원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관한 사항 등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p>

현행 규정	검토(안)
(신 설)	<p>제36조의3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신청) ① 제 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 받고자 하는 단체(이하 “신청단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신청단체가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단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5항의 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p>
(신 설)	<p>제36조의4 (사후관리) 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에 단체의 조직, 운영, 재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지방국세청장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단체가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서류만으로 해당 단체의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단체에 자료제출 및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재정경제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p> <p>⑤ 전항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36조의3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p>

라.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을 위한 CHECK KIST(안)

<b>1. 조직 check</b>				
상 호				
대 표 자		설립일		
소 재 지				
임원구성				
회원구성				
추천부서				
<b>2. 운영 check</b>				
수입금규모		기본재산		
수입금내역				
정 관 상 공익사업	· · ·			
실제사업	<input type="checkbox"/> 정관과 일치 <input type="checkbox"/> 정관과 불일치			
<b>3. 시행규칙( § 18①39) 요건총족 check</b>				
	내 용		총족 여부	
			여	부
설립근거	<input type="checkbox"/> 민법 제32조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혜자	<input type="checkbox"/> 불특정다수 <input type="checkbox"/> 회원등으로 한정			
잔여재산 귀속	<input type="checkbox"/>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비영리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에 한정하는 규정 없음			
사회적물의 발생단체	해당없음			
<b>4. 검토결과</b>				
<input type="checkbox"/> 지정(분류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input type="checkbox"/> 비지정				
○ 지정 사유 :				

## 4. 현행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 (1) 대상법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公益性이 큰 비영리법인으로서

- ①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 ②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 (2) 손비인정 한도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 (3) 추천자 : 주무관청의 장

### (4) 추천방법 :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 (5) 추천시 제출서류

- ① 설립허가증 사본
  - ② 등기부등본
  - ③ 정관
  - ④ 사업계획서
  - ⑤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⑥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2서식)
- \* 주무관청에서 작성 🌻

[별지 제63호의 2 서식]

<b>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b>			
<b>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b>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 개시일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내용 (별지 작성가능)			
<b>2. 기부금관련</b>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별지 작성가능)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억원)</span>			
년		년	년
년		년	계
다. 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별지 작성가능)			
<p>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 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의 장)    인</p>			
<b>재정경제부장관 귀하</b>			